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1선거구

고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현행 조례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 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친 지역에서조차 도시
재생위원회의 심의를 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중복에
따른 행정낭비와 사업 시행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나아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진흥구역에 대해서도 당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으로 보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에 대한 노후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례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